

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(안)

심 사 보 고 서

1996. 5. 25.

내 무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. 제출일자 : 1996년 5월 17일

. 회부일자 : 1996년 5월 17일

다. 상정일자 : 제125회 임시회

. 제2차 내무위원회(1996. 5. 22)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

. 제4차 내무위원회(1996. 5. 25)심의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증평출장소장 김 중 구)

가. 제안이유

지역경제활성화 및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업용지 조성
과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 증평출장소장이 조성하는
일단의 공업단지에도 준용하기 위한것 임.

나. 주요골자

- 공업단지조성과 분양에 필요한 사항 규정
- 사업의 시행

- 충청북도증평출장소장 또는 위탁 시행
 - 토지매입, 사업비의 결정, 공업용지의 조성 및 사용
 - 공업단지 심의위원회 운영
 - 설치, 구성, 기능, 회의소집, 사무처리
 - 용지분양
 - 입주자격, 분양가 결정, 분양절차이행
 - 공동시설의 관리
 - 입주자 부담으로 관리, 유지보수비 수납시 별도관리
 - 타법령과의 관계
 -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타관계법 적용
- 도시계획법, 건축법, 조례감면규제법, 지방재정법, 토지수용법등

3. 전문위원검토의견

(전문위원 오창환)

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조례안을 검토한바,

이는 공업발전의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,

사업의 시행, 공업단지 심의위원회운영, 용지분양, 공동시설의 관리 등에 대해 합리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문화하여 신설코자 하는 내용으로서,

승인하여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 략”

5. 노 근 보 시 :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충청북도증평출장소 소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중요한 조례, 규칙, 훈령의 제정 개폐시에는 소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 후 안건이 제출됐어야 마땅한 것이나 이를 결한것은 행정 절차상 흠결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나, 지역발전과 본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조정위원회를 즉시 개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통과키로 의견을 모았음.

6. 수정안요지 : 충청북도증평출장소 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 관한 조례제정안의 제2장 사업의시행 제5조 (토지의매입) 제2항및 제3항과 제6조(사업비의결정및부담)제2호의 조문중"지장물"을 "지상권"으로 자구수정하고 제5장 보칙 제28조(규칙)중 제29조로 하고, 제28조"본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입주업체와의 용지분양 계약체결이 전체 분양면적의 70%이상일 경우에 시행한다."라는 (사업착수) 조문을 신설.

7. 심 사 결 과 : 수정 동의안 6인중 6인찬성으로 동조례 제정안 제2장 사업의 시행 제5조 제2항 및 제3항과 제6조 제2호의 조문중 "지장물"을 "지상권" 으로 하고, 제5장 보칙 제28조를 제29조로 하고, 제28조에 "본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입주업체와의 용지분양 계약체결이 전체분양면적의 70%이상일 경우에 시행한다." 라는 조문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고 기타부분은 도원안대로 의결

8. 소 수 의 견 요 지 : "없 음"

9. 기 타 필 요 한 일 반 사 항 : "없 음"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제정안
- 신구조문 대비표
-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